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 삼육대학교 **요람**

## Education Manifesto

교훈 | 진리 · 사랑 · 봉사

삼육 인재상 | 삼육MVP -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 비전 |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 교육이념

삼육대학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육이상에 따라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 위에 숭고한 기독교 신앙과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세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진리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웃과 세계와 천연계의 평화로운 삶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 □ 교육목적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삼육MVP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 교육목표

-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
-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언어 능력을 지닌 글로 벌 리더 육성
-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 「삼육대학교 UI」

University Identity

U.I.(University Identity)란 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이미지를 통일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U.I.는 대내적으로 대학의 정체성을 다지고 학교이념을 확고히 하며, 구성원간의 단결력을 고양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대학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체계적이며 능동적으로 전달하여 장단기적으로 대학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시스템이다.

## 심벌마크



## 디자인의 의미

완전체로서의 원형은 우주와 지구를 상징하며, 동시에 천연계의 우주 만물의 완성과, 삼육인의 융합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계 속의 삼육대학교의 선도적인 역할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으로 세계 곳곳의 각 분이에서 선두자적 역할을 하는 삼육인의 능력을 봉사의 손길로 나타내는 의미도 포함한다.

## 표현 이미지

각 원형은 삼위일체적 구도로 완전함을 지(知), 영靈), 체(體) 곧 삼육교육(三音教育)의 이념을 상징하고, 세 타원은 자연 생명의 상징인 원형과 만나 생명을 간직한 형상인 씨앗의 모양을 이루고, 또한 중앙에 있는 미래적 삼각형 이미지는 우리 대학교의 교훈인 진리, 사랑, 봉사의 큰 뜻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영원한 초월적 세계를 지형하고 있다. 중심에서 뻗어 나오는 밝은 청색은 생명 탄생과 자연 친화를 상징하며, 바깥쪽으로 짙어지는 청색은 전통적이며 전향적인 삼육대학교의 교육의지를 미래지향적인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이 청옥색은 원대한 이상 곧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삼육인이 입어야 하는 예복 즉 순종의 의상을 의미하고 있다.

완전체의 원형이 만나 이루는 세 꼭지점의 삼각형체는 지(Menus), 영(Spiritus), 체(Corpus)의 균형진 발달로 인한 전인교육(全人敎育)으로 초월자의 형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8학년도 학사일정」

학사일정은 대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행사
					1	2	3	
	3	5	6	7	8	9	10	1 삼일절
3	11	12	13	14	15	16	17	19-21 수강과목 중도포기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9-5/4 중간 강의평가(7주차) 16-20 중간고사 (8주차)
4	15	16	17	18	19	20	21	20 중간고사 기간 중 교수협의회 23-27 MVP 주간 (9주차)
	22	23	24	25	26	27	28	30-5/25 학교현장교육실습
	29	30						30-5/4 교직원 춘계기도주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어린이날
5	13	14	15	16	17	18	19	7 대체휴일 14-18 봄 사랑나눔주간
	20	21	22	23	24	25	26	14-10
	27	28	29	30	31			71002
						1	2	6 현충일
	3	4	5	6	7	8	9	13 임시공휴일(지방선거) 11-15 기말고사
6	10	11	12	13	14	15	16	15 기말고사 기간 중 교수협의회
	17	18	19	20	21	22	23	12-24 성적입력기간 25-7/1 성적확인기간
	24	25	26	27	28	29	30	25-7/13 계절대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3-17 계절학기 성적확인
7	15	16	17	18	19	20	21	23-8/3 교역자 계절(하기)대학
	22	23	24	25	26	27	28	30-8/1 예비수강신청 기간
	29	30	31					
				1	2	3	4	6-8 수강신청 기간
	5	6	7	8	9	10	11	15 광복절 17 후기학위수여식
8	12	13	14	15	16	17	18	20-22 교수협의회 및 헌신회
0	19	20	21	22	23	24	25	20-24 재학생등록기간
	26	27	28	29	30	31		24 휴·복학만기일 27 개강 27-31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행사	
							1		
	2	3	4	5	6	7	8		
9	9	10	11	12	13	14	15	17-19 수강중도포기 24-25 한가위	
9	16	17	18	19	20	21	22	] 24-23 인가귀 ] 26 대체휴일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3 개천절 . 9 한글날	
	7	8	9	10	11	12	13	- 10 개교기념일 - 10 천보축전	
10	14	15	16	17	18	19	20	11 체육대회	
	21	22	23	24	25	26	27	8-11/2 중간 강의평가(7주차) 22-26 중간고사 (9주차)	
	28	29	30	31				26 중간고사 기간 중 교수협의회 29-11/2 교직원 추계기도주일	
					1	2	3		
	4	5	6	7	8	9	10		
11	11	12	13	14	15	16	17	2-3 IFL 세미나(Creation 세미나) 5-10 가을 사랑나눔주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3-7 보강주간	
	2	3	4	5	6	7	8	10-14 기말고사 12-23 성적입력기간	
12	9	10	11	12	13	14	15	14 기말고사 기간 중 교수협의회	
	16	17	18	19	20	21	22	25 성탄절 - 24-1/15 계절대학	
	23	24	25	26	27	28	29	_ 24-30 성적입력확인	
	30	31						31 종무식	
			1	2	3	4	6	   1 신정	
	6	7	8	9	10	11	13	2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	
1	13	14	15	16	17	18	20	7-18 교역자 계절(동기)대학 15-18 계절성적확인기간	
	20	21	22	23	24	25	27	28-30 예비수강신청 기간	
	27	28	29	30	31			4.6	
						1	2	4-6 설날 11-13 수강신청 기간 11-14 MAYD 캠프(1차)	
	3	4	5	6	7	8	9	11-14 MVP 캠프(1차) 15 전기 학위수여식 18-19 교수협의회 및 헌신회 18-21 MVP 캠프(2차) 18-22 재학생등록기간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21-22 신입생 및 편입생 수강신청   22 휴·복학만기일	
	24	25	26	27	28			22 유·녹막단기월 25 개강 / 입학식 25-3/1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목 차

#### CONTENTS

<ul> <li>○ 대학 설립 이념 /8</li> <li>○ 삼육대학교 비전 및 발전전략 /9</li> <li>○ 대학 기구표 /10</li> <li>○ 학과 사무실 안내 /11</li> <li>○ 2018학년도 수강 신청 일정 안내 /12</li> </ul>	
수강 관련 주요 학칙 및 지침 안내	3
특별 프로그램 안내 ···································	51
교육과정 안내	'4

## 「대학 설립 이념」

소 육대학교는 1906년 10월 10일에 평안남도 순안(順安)에서 시작된 **의명학교**(義明學校)와 그것을 계승한 조선합회 사역자 양성소, 그리고 삼육신학원(三育神學院) 및 삼육신학대학을 모체로 하여 발전된 대학교이다.

우리 대학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과 학문연구의 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지성** 과 영성과 신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현세에서 개인의 행복한 생활과 인류 사회에 이바 지하는 보람된 삶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그 사명으로 삼는다.

우리 대학교는 이와 같은 교육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교양을 포함한 일반 교양 영역과 다양한 전공 영역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이론과 실제가 조화된 교육을 지향 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의 학술 이론과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숙달을 기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적 사명을 두 마디의 비전으로 요약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는 이 비전에 담긴 대학의 이미지와 특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문의 수월성 교육은 물론이고 인성교육(人性教育)을 강조하고, 지작영작신체적으로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全人教育)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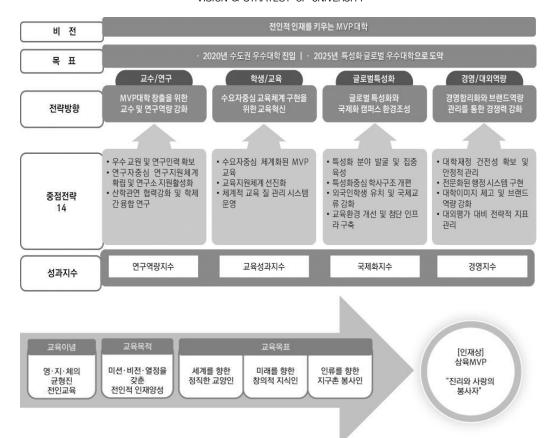
삼육대학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육이상에 따라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 진 발달 위에 숭고한 기독교 신앙과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세에 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진리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웃과 세계와 천연계의 평화로운 삶에 이 바지하며, 나아가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2018학년도 대학학사편람(학생용 대학요람)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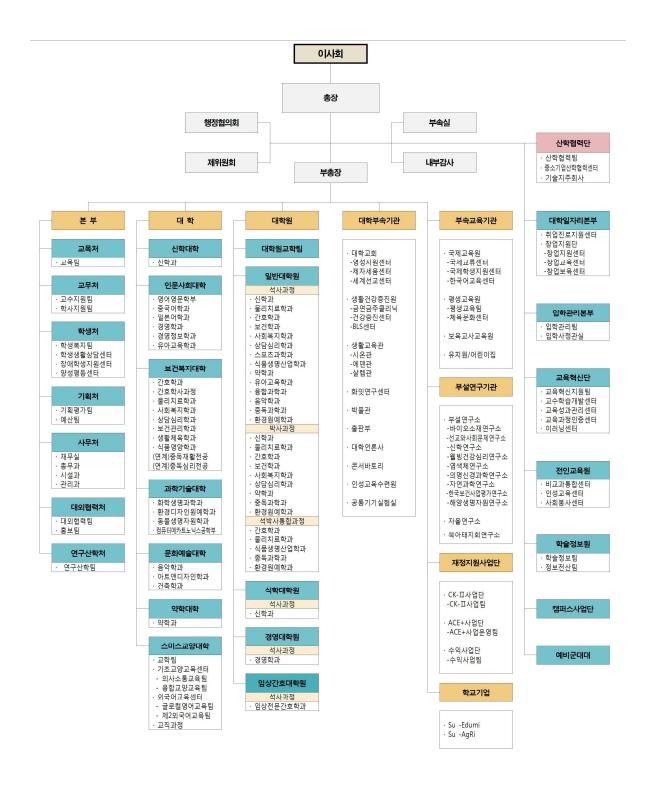
## 삼육대학교 비전 및 발전전략

VISION & STRATEGY OF UNIVERSITY



전략	인재상	핵심역량	역량정의	하위역량
Mission	정직한	시민의식	• 인성과 교양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직하고 바른 윤리적인 세계시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역량	<ul><li>준법성</li><li>참여의식</li><li>양심</li></ul>
MISSION	교양인	소통	<ul> <li>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협업을 이끌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량</li> </ul>	• 의사소통 • 대인관계 • 사회성
VIII.	창의적	창의성	• 자원 및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며 창조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역량	• 전문성 • 통합적 사고 • 개방성
Vision	지식인	자기주도	<ul> <li>스스로의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관리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계발하는 의지적 역량</li> </ul>	<ul><li>문제해결능력</li><li>목표설정 및 실천</li><li>자기 효능감</li></ul>
Danaina	지구촌	글로컬	• 외국어 활용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수용 능력을 가지고 글로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ul><li>글로벌 능력</li><li>적응 능력</li><li>다문화 이해</li></ul>
Passion	Passion 봉사인	실 천	• 이타적인 마음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역량	<ul><li>배려심</li><li>봉사 및 실천력</li><li>사회적 책무</li></ul>

## 「대학 기구표」



## 「학과 사무실 안내」

#### DEPARTMENT OFFICE

소속학과	사무실위치	사무실번호
간호학과	제3과201	1593
건축학과	제2실202	1856
경영정보학과	바201	1568
	바201	1566
	제2과209	1764
동물생명자원학과(동물자원학전공)	제2과104	1761
물리치료학과	제3과101	1638
미술컨텐츠학과	조형관205	1842
보건관리학과	에303/에304	1673
사회복지학과	사106	1671
상담심리학과	국102	1679
생명과학과	제2과407	1720
생활체육학과	체306	1691
스미스교양대학	에103	3353
식품영양학과	제1과103	1654
신학과	신108	1513
아트앤디자인학과(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제2실101	1835
약학과	제3과315	1616
영어영문학부	사306	1533
원예학과	온실101	1740
유아교육과	제1실305	1576
음악학과	음308	1818
일본어학과	바406	1549
자유전공학부	에103	1912
중국어학과	바406	1546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카메카트로닉스학과)	제1실216	1804
컴퓨터학부	제1실401	1790/1792
화학과	제1과206	1710
환경디자인원예학과(환경그린디자인학과)	제2과505	1742

## I 학사 업무 유관 부서 위치 및 연락처 I

교과목	담당 사무실	전화번호	장소
전공과목	소속 학과사무실	상단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u> </u>
교양과목	스미스교양대학	(02)3399-3353	다니엘관 1층 107호
채 <del>플</del>	교목처	(02)3399-3334	이종순홀(다목적관) 103호
글로컬영어(실용영어)	스미스교양대학	(02)3399-3353	다니엘관 1층 107호
MVP+교육	인성교육원	(02)3399-3077	인성교육원 1층
e-Class	교수학습개발센터	(02)3399-3374	다니엘관 5층
MOS(컴퓨터활용)	학교기업	(02)3399-2075	에스라관 2층
컴퓨팅사고력(온라인)	시사영어사	(02)2008-5232	외부 공간
교직	교직	(02)3399-3151	학사지원센터 바울관 1층 101호
사회봉사	사회봉사	(02)3399-3264, 3265	에스라관 1층 105호
외래강사문의	교무처	(02)3399-3358	백주년기념관 1층 108호

## 2018학년도 「수강 신청 일정 안내」

TAKING-CREDITS SCHEDULE

## /1학기「수강신청」/

#### ■ 수강신청 일정안내

• 예비신청 : 2018.01.29.(월) ~ 2018.01.31.(수) • 수강신청 : 2018.02.05.(월) ~ 2018.02.07.(수)

• 변경기간: 2018.02.26.(월) 10:00 ~ 2018.03.02.(금) 15:00

※변경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불가

#### • 수강신청 장소

자택 등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소

#### • 수강신청 방법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uwings.syu.ac.kr) ※ 수강신청 변경후 반드시 본인의 수강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출력물 보관)

#### • 수강과목 중도포기 기간

2017년 03월 19일(월) 10:00 ~ 2017년 03월 21일(수) 17:00

※ 중도포기 기간에는 과목취소만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함)

#### / 2학기「수강신청」/

#### ■ 수강신청 일정안내

• 예비신청 : 2018.07.30.(월) 10:00 ~ 2018.08.01.(수) 17:00 • 수강신청 : 2018.08.06.(월) 10:00 ~ 2018.08.08.(수) 17:00 • 변경기간 : 2018.08.27.(월) 10:00 ~ 2018.08.31.(금) 15:00 ※ 변경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불가

#### • 수강신청 장소

자택 등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소

#### • 수강신청 방법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uwings.syu.ac.kr) ※ 수강신청·변경후 반드시 본인의 수강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출력물 보관)

#### • 수강과목 중도포기 기간

2018년 9월 17일(월) 10:00 ~ 2018년 9월 19일(수) 17:00

※ 중도포기 기간에는 과목취소만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함)

## 「수강 관련 주요 학칙 안내」

General Regulations on Taking-Credit

#### ■ 수강신청 학점

● 기본학점 : 수강신청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7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최소학점: 11학점 이상 (미달 시 학기가 인정되지 않음)

3 제한사항: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장학금 기준 : 성적장학금 대상이 되려면 15학점(약학과 1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⑤ 폐강기준** : 수강인원이 전공 8명, 교양 16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은 폐강된다.

#### ■ 재수강

**1 정의**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2 인정범위 : 재수강 인정교과목 범위는 교과코드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모든 강좌로 하되, 학과사정

에 따라 교과목명만 변경된 경우, 교과목변경신청서를 통해 재수강으로 인정

❸ 수강신청 : 교과목 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할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중복해서 받지 않습니다.

◆ 성적처리 :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허용한다. 재수강 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

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 ■ 중도포기

**1 정의** : 수강신청 한 과목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을 포기하는 제도

**2 신청기간**: 개강 후 **3주차(**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

**3 범위** : 수강신청 한 모든 과목이 중도포기가 가능

#### 4 제한사항

• 학점제한 -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1학점)에 미달 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음

• 학기제한 - **8학기 초과자**(학기 초과로 인한 학점 등록생)는 중도 포기할 수 없음. 다만, 장애학 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1학점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 인원제한 - 중도 포기는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해당강좌의 수강인원이 **설강 기준 인원**에 미달될 경우 중도 포기할 수 없음

**⑤ 신청방법** : SU-WINGs에서 수강중도포기 신청을 기간내에 신청, 별도의 수업 담당교수의 **승인 없이 신청** 가능

## 「수강 관련 유의 사항」

General Remarks on Taking-Credit

#### ■ 교양선택 강좌 수강신청

- 교양선택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학과전공에 따라 금지된 과목 외에, **4개 영역**(일반선택영역제외)에서 1과목씩 4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 영역 구분 : 인문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일반선택영역(일반선택영역은 4 개 영역에서 제외됨)

#### ■ 재수강의 성적 상한선

과거에 이수한 학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나 **성적 상한은 B+**이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대체된다.

#### ■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수강신청 시 **17학점**(단, 약학과 20학점)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전학기 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점을 초과로 신청하였을 시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된다.

#### ■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학사경고로 학점 제한을 받은 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학점을 초과로 신청하였을 시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 미수강신청 과목 학점 불인정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은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하다.

#### ■ 강좌 폐강 조건

한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6명 미만**, 전공과목인 경우 **8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강 후 본 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사)에 폐강과목을 공지한다. 폐강과목은 일괄 취소처리 되므로 다른 과목으로 수강 신청 하여야 한다.

#### ■ 교양필수 성경과목 타과 수강신청 제한

교양필수 성경과목은 소속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 수강과목 중도 포기 학점 제한 및 장학금 지급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1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중 도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 는 학생은 15학점(악학과는 20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 강의평가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두 주 동안 「중간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에게는 자기평가를 교수에게는 남

은 절반의 강의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아 효과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그 혜택을 수강 학생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적극 참여한다.

또한,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말 1회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다음 학기 강의 준비에 참고가 되며 교수의 업적평가에도 반영되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한다.

#### ■ 인성교양 1과목 수강

핵심교양과목(1,2학년 개설)에 개설되는 종교와 인생, 인성과 사회,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수업을 각각 학점씩 총 8학점 이수 후 3, 4학년 동안은 인성교양 영역에서 3학점 1과목(2018학년도부터 적용)을 반드시 이수해야함. (\* 3-1 편입생은 2과목 이수)

## 「주요 학칙 안내」

Primary Regulations

## /수업/

#### ■ 출석

-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FA
- 3번 지각은 1회 결석, 2회 조퇴 1회 결석
- 유고결석계[학사지원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인정 됨]

#### ■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삼촌까지 친족사망 (3일) 사망확인서, 가족증명서 첨부
- •학생본인 입원기간(종합병원), (최대 2주) 입원확인서 첨부
-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실제 소요기간) 입영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첨부
- •교육실습 (실제 소요기간) 교직 학과장님 확인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한 경우 (실제 소요기간)

또한 이번 학기부터 새로 추가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인정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 ■ 성적

•일반과목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 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 ■ 학사경고

•정의 :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경고

•요건 : 어떠한 사유로나 해당학기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학점제한 :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스텝 업)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 •해제 :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
- •제적요건 :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

#### ■ 유급(간호학과, 약학과에 해당)

-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이거나 1년간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일 때 매 학년 말 유급된다. 간호학과의 경우 유급이 2회시 제적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 ■ 계절학기 (2학기 이상 등록 후 신청가능)

- •기간 : 하계는 6월-7월(3주), 동계는 12월 익년 1월(3주)
- 수강신청 : 하계는 6월 첫주, 동계는 12월 첫주
- 신청학점 : 학기당 6학점내등록금 : 학점당 7만원
- 1학년 신입생은 1, 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가능

#### ■ 학점교류 (2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정의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자격 : 1학년 신입생은 1, 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 계절학기부터 신청 가능
- 이수학기 : 1) 정규학기 2) 계절학기
- 이수학점
  - 가.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
- 학점인정
  - 가.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교양과목은 영역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균평점 산정에도 포함됨.
  - 다. 졸업신청을 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학적/

#### ■ 전과

- 신청학기: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및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 신청기간 : 매학기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1학기 : 1월 중, 2학기 : 7월 중)
- 대상학과 및 학년 : 전 학과 2, 3, 4학년으로 진급 예정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가 가능하다. 단, 약학과 전과 불가능)
- 신청방법 : SU-WINGs ▶ 학적정보 ▶ 전과신청 후 「전과신청서」를 출력 후 학사지원센터 접수
- •지원자격:
  - 1) 2학년: 2017년 1학기에 2학년(3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

점이 2.50 이상인 자

- 2) 3학년: 2017년 1학기에 3학년(5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6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3) 4학년: 2017년 1학기에 3학년(5학기째)이 되는 학생으로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 • 유의사항 :

- 1)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수 있음.
- 2) 실기가 필요한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 ■ 휴학

•정의 :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 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구분	1학기	2학기
일반휴학	1월 중순 ~ 2월 말(개강 전)	7월 중순 ~ 8월 말(개강 전)

- •신청절차 : SU-WINGs ▶ 학적정보 ▶ 휴학신청 후 학사지원센터에서 승인(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음)
- 휴학연한 :
  - 1)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 2)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 ②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③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 (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 •기간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 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신청 제한 :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이 불가(입영휴학 포함). 다만,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

#### ■ 복학

- •정의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 •신청기간
- •신청기간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 전 복학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6월 초 ~ 8월 말
개강 후 복학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3주 이내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2주 이내

- •신청절차 : SU-WINGs ▶ 학적정보 ▶ 복학신청 학사지원센터에서 승인(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음)
- •유의사항
-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하다.
- 3)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

을 시는 제적된다.

4)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하다.

#### ■ 퇴학 및 제적

- •정의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 •요건 :
  - 1) 미복학 제적
    - 가)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2) 미등록 제적 :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3) 성적 불량 제적 : 학사경고(1.5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
  - 4) 재학연한 만료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5)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 6) 타교에 입학한 자

#### ■ 재입학

•정의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 •일정 및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일정공고	전년도 12월 중	5월 중
신청시기	1월 중	7월 중

•신청방법 : SU-WINGs 로그인 후 → 학적변동 → 재입학

•정원 :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신청자격 :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성적 및 졸업/

#### ■ 성적

•정의 : 매 학기 학생별 성적평가 결과를 담당교수가 전산입력하여 성적처리 하는 것

•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 전후

•성적평가 방법

- 1)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2)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 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 3) 성적평가 표시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С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В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Р	불계

#### •평균평점 환산

- 1. 4.5만점 환산기준표
- 2. 백분위 환산기준표

#### ■ 졸업

- •학위수여요건
  - 1. 이수학기 : 8학기 이상~재학연한 이내 이수자
  - 2. 졸업소요 취득 학점 이수 (입학년도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소요 취득학점)
- •학년수료요건
  - 1. 각 학년별 소정의 학기등록, 이수학점 취득 시 해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수료증명 서를 발급함.
  - 2.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35학점)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 [교육과정별 학점이수 기준표]

구 분		졸업이수 학점	교양		전공		자유선택
			필수	영역 필수	주전공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 부전공/교직/평생교육사	학점
단일전공		130	24	15	75		16
					(심화전공 또는 자기주도설계전공 포함)		
복수전공		130	24	15	39	36	16
연계전공		130	24	15	39	36	16
융합(공유)전공		130	24	15	0-75	75	16
선택 사항	부전공	130	24	15	54	21	16
	교직	130	24	15	50	22	19
	평생교육사	130	24	15	54	30	7

#### ■ 조기졸업

#### •신청자격

- 1) 이수학기 :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2) 평균평점 : 4.20 이상
- 3)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우등졸업

## •신청자격

1) 이수학기 : 4학기 이상 재학한 자

2) 평균평점 :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개정: 2007.2.23]

3) 취득학점 :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4)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

## 「특별 학점 인정」

Extra Credit Regulation

#### ■ 군이러닝 학점인증제

•정의 : 본교생이 군 복무 중 본교에서 개설한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수강방법 :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치를 거쳐 원격강좌 수강

•신청절차 :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학점 이수증을 학사제원센터에 제출

•학점취득 : 취득 후 학점 이수증을 제출하면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학점인정 : 계절학기 성적으로 이기

#### ■ K-MOOC 강좌 특별학점인정제

•정의 : 학기별로 대학에서 정하는 K-MOOC 강좌를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소정의 절치를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대상 : 재학생(초과학기 재학생 제외)

•인정과목: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

•수강신청 : K-MOOC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대학이 학기별로 정한 MOOC과목만 수강신청

•학점인정 : 학기당 1학점(한 과목),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 1) 교양선택과목(일반선택영역)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총 3학점에 한해 인정함
- 2) 학기말에 K-MOOC 수강사이트로부터 이수증을 발급받아 학사지원센터에 기간내에 제출하면 계절 학기에 성적으로 인정

####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학점인정

•정의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 대학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학점인정 : 최대 6학점

•신청절차 : 입학 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학사지원세터에 제출

•학점인정 : 계절학기 성적으로 이기

#### ■ 학석사 연계과정

•정의 :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공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학사학위과 정과 석사학위과정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

•신청자격:

-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
-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 •신철절차 :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 •유의사항

1)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2) 수강신청 학점은 학·석사연계과정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학점을 넘을 수 없음.

#### ■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사회봉사 과목)

•정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학문적,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나 또는 저개발 국가의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봉사학습을 전공에 연계하여 교육하는 교과목을 Service Learning 교과목이라고 한다.

•과목명 및 학점

이래 SL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들은 이번 학기 여름계절학기에 사회봉사(SL)과목을 수강신청 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SL)과목은 졸업필수 과목인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 과 목 명 : 사회봉사(SL) ○ 학 점 : 1학점 ○ 구 분 : 교필 ○ 평 가 : P/F

•신청절차 : 자세한 내용은 사회봉사단 문의

#### 「온라인 강좌」

#### ■ 온라인 개설 강좌

- 1) 토익(Total Toeic Care) 시사영어사, 별도의 안내문 학사공지
- 2) SU-edumi 강좌 SU-edumi에서 주관하는 100% 온라인 강좌로 계절학기에만 개설. 별도의 안내문 학사공지
- 3) 컴퓨팅사고력(2017학번부터 적용) 시사영어사에서 주관하는 100% 온라인 강좌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로 모든 학생들이 이수 해야 하는 컴퓨터 활용 과목임
- 4) 컴퓨터활용(MOS)(2016학번까지만 적용, 2017학번부터는 컴퓨팅사고력으로 변경됨) 시사영어사에서 주관하는 100% 온라인 강좌로,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 활용 과목임
  - 워드 ② 파워포인트 ③ 엑셀 ④ 엑세스 중 택 2

#### │ 연계(융합)전공 운영지침 │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36조의 2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연계(융합)전공이라 함은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 제3조 (연계·융합전공 개설)

- ① 2개 이상의 학부(학과, 전공)에 속해 있는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개발하고, 참여할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임교수를 선임한다.
- ②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승인한다.
- ③ 연계(융합)전공 개설을 위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전공명칭 및 참여 전공
  - 2. 전공개요 및 개설 목적
  - 3. 배출 인력의 진로와 진출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 4. 교육내용 및 연계(융합)전공 운영 기본계획
  - 5.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 6. 참여교수 명단 및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 7. 연계(융합)전공 이수 시 졸업요건(졸업시험, 논문) 및 학위명
- ④ 연계(융합)전공 신설 신청은 연계(융합)전공 활성화 차원에서 매 학년도말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 (연계·융합전공 폐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계(융합)전공은 폐지 대상이 되며,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 1. 3학기 연속 신청학생이 없는 경우
  - 2. 기타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 (연계·융합전공 운영) 연계(융합)전공 운영은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배정하고, 행정지원을 위해 조교 1인을 배정한다.

#### 제6조 (교과목 편성)

- ① 연계(융합)전공과목 편성은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 학부(학과,전공)에 개설된 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학부(학과, 전공)과목도 연계(융합)전공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연계(융합)전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과목(9학점)까지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부(학과, 전공)별로 추가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 ③ 연계(융합)전공으로 개설하는 과목은 제1전공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④ 개설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전공교과목의 폐강기준에 따른다.
- 제7조 (연계·융합전공 이수신청) 연계(융합)전공 이수신청은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해당 전공주임 허가를 받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8조 (신청 및 절차)

①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연계(융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연계전공 지침

- 합)전공이수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계(융합)전공 이수대상자를 결정하여 즉시 관련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이수를 위하여 연계(융합)전공의 과목수강은 연계(융합)전공 신청 이전에 가능하며 이수한 학점은 연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연계(융합)전공 이수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학부(학과,전공)의 제한 은 없다.

#### 제9조 (학점이수) 연계(융합)전공의 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1전공의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연계(융합)전공 이수자는 해당 연계(융합)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연계(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졸업전까지 연계(융합)전공 포기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계(융합)전공 중도 포기자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제1전공의 교과목과 연계(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연계(융합)전공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운영 및 관리)

- ①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연계(융합)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운영 하고, 연계(융합)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졸업사정, 학위수여 등)은 주임교수 소속 대학에서 담당한다.
- ② 연계(융합)전공 이수 인원은 참여 학부(학과, 전공)의 전임교원 수, 강의실(실험실습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공별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 (학위수여)

- 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 되었으나 연계(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2개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 ② 연계(융합)전공 신청자 중 연계(융합)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융합(공유)전공 운영지침 |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36조의 2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융합(공유)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융합(공유)전공이라 함은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공유)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하며, 소속 학과와 무관하게 제1전공으로 인정된다.

#### 제3조 (융합·공유전공 개설)

- ① 2개 이상의 학부(학과, 전공)에 속해 있는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개발하고, 참여할 전 공 교수들로 구성된 융합(공유)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임교수를 선임한다.
- ②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승인한다.
- ③ 융합(공유)전공 개설을 위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전공명칭 및 참여 전공
  - 2. 전공개요 및 개설 목적
  - 3. 배출 인력의 진로와 진출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 4. 교육내용 및 융합(공유)전공 운영 기본계획
  - 5. 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 6. 참여교수 명단 및 융합(공유)전공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 7. 융합(공유)전공 이수 시 졸업요건(졸업시험, 논문) 및 학위명
- ④ 융합(공유)전공 신설 신청은 융합(공유)전공 활성화 차원에서 매 학년도말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 (융합·공유전공 폐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융합(공유)전공은 폐지대상이 되며, 교육과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 1. 3학기 연속 신청학생이 없는 경우
  - 2. 기타 융합(공유)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 (융합·공유전공 운영) 융합(공유)전공 운영은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배정하고, 행정지원을 위해 조교 1인을 배정한다.

#### 제6조 (교과목 편성)

- ① 융합(공유)전공과목 편성은 연계전공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 학부(학과,전공)에 개설된 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학부(학과, 전공)과목도 융합(공유)전공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융합(공유)전공에 참여하는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융합(공유)전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6과목(18학점)까지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부(학과, 전공)별로 추가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 ③ 융합(공유)전공으로 개설하는 과목은 제1전공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④ 개설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전공 교과목의 폐강기준에 따른다.
- 제7조 (융합·공유전공 이수신청) 융합(공유)전공 이수신청은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할수 있으며, 지원자는 해당 전공주임 교수 허가를 받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8조 (신청 및 절차)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융합전공 지침

- ①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공유)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융합(공유)전공이수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이수대상자를 결정하여 즉시 해당 융합 (공유)전공 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이수를 위하여 융합(공유)전공의 과목수강은 융합(공유)전공 신청 이전에 가능하며 이수한 학점은 융합(공유)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 융합(공유)전공 이수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학과(학부, 전공)의 제한은 없다.

#### 제9조 (학점이수) 융합(공유)전공의 학점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전공의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융합(공유)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해야 제1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 2. 제1전공의 교과목과 융합(공유)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융합(공유)전공은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융합(공유)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졸업전까지 융합(공유)전공 포기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합(공유)전공 중도 포기자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인정된다.

#### 제10조 (운영 및 관리)

- ① 융합(공유)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융합(공유)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운영 하고, 융합(공유)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졸업사정, 학위수여 등)은 주임교수 소속 대학에서 담당한다.
- ② 융합(공유)전공 이수 인원은 참여 학부(학과, 전공)의 전임교원 수, 강의실(실험실습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공별 융합(공유)전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 (학위수여)

- 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 되었으나 융합(공유)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1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 ② 융합(공유)전공 신청자 중 융합(공유)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온라인 강좌 운영지침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 24조 4항에 근거하여 본교 온라 인 교과목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온라인 강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콘텐츠와 수 업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운영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e-Learning 교과목 : 전체 15주 중 12주 이상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이 하 "e러닝"이라 한다)을 지칭한다.
  - 2. Blended-Learning 교과목 : 강의실 출석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이하 "b러닝"이라 한다)을 지칭한다.
  - 3. Flipped-Learning 교과목: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온라인 선행학습, 교수-학습자간 다양한 교육 활동의 본학습, 정리 및 평가 등의 후행학습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이하 "플립드러닝"이라 한다)을 지칭한다.
  - 4. MOOC 교과목 : 해외 또는 국내에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형태로 개설하여 학점취득 또는 수료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 5. 보조 활용 교과목 : 기존 이러닝 콘텐츠 혹은 학기 중 이루어지는 강의를 촬영하여 보강 등 수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 제3조 (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 ① 온라인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15주 이상으로 하고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e러닝 교과목의 콘텐츠는 12주 이상, b러닝 교과목의 콘텐츠는 6주 이상 온라인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 ③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습내용 동영상, 토론, 팀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수업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1학점 당 매주 50분 이상으로 하며 이 중 동영상 콘텐츠는 합쳐서 3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플립드러닝의 경우는 합쳐서 15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작된 강의는 3년을 주기로 재개발 또는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온라인 교과목의 개발)

-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참여 교원의 신청을 받아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 ② 온라인 교과목의 개발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신규 개설 확정된 교과목에 한해 개발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 개발 교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저작권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 (온라인 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

- ① 온라인 교과목의 개설은 정규 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며, 참여 교원 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확정한다.
- ② 온라인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전임 교원도 담당교수가 될 수 있다.
- ③ 해당 학기에 최소 1개 이상 오프라인 교과목을 개설한 교원에 한해서 최대 2과목까지 e 러닝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④ 위 ①②③항 이외에 MOOC 교과목을 개발하여 개설할 수 있다.
- ⑤ 교양필수 및 전공교과목은 20명 미만, 교양선택 교과목은 50명 미만일 경우 폐강 처리

하다.

#### 제6조 (온라인 교과목의 운영)

- ① 온라인 교과목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 ② 온라인 교과목은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시수를 인정한다.
- ③ 수강인원이 200명이 초과할 경우 TA(수업지원 조교)를 둘 수 있다.
- ④ b러닝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6주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 ⑤ 플립드러닝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공된 동영상은 10주이상 제작하여 야 하며, 수업 운영시 동영상 콘텐츠의 시간만큼 오프라인 수업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동영상 콘텐츠 제작 주차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운영)

- ①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 ② 본교 학생은 온라인 교과목(e러닝 교과목 및 MOOC교과목 해당)으로 정규학기 당 6학점 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기간 중 졸업학점의 5분의 1일 이내에서 온라인 교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온라인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오프라인 교과목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온라인 교과목에 대해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 제8조 (온라인 교과목의 저작권)

- ① 본교에서 지원을 받아 개발한 온라인 교과목은 개발자와 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는 본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문제 발생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MOOC 운영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온라인 강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MOOC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강의개설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내용을 이수할 수 있고, MOOC 플랫폼을 통해 과목이수 인증까지 가능한 온라인 교과목 또는 교육방식
  - 2. 인증: MOOC를 수강하고 온라인상의 평가 및 시험 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에 있다고 인 정된 수강생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

#### 제3조 (MOOC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① 교수학습개발원은 MOOC가 교육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② 교수학습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원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 ③ MOOC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4조 (MOOC의 형태) MOOC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서녹화형
  - 2. 태블릿 PC 녹화형
  - 3. 다큐멘터리형
  - 4. 그밖에 MOOC 교육방식에 적합한 형태
- 제5조 (MOOC의 구성요소와 기본단위) ① 다음 각 호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면 MOOC의 기본 단위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1. 강의동영상
  - 2. 스크립트 콘텐츠
  - 3. 평가 콘텐츠(퀴즈, 과제 등)
  - 4. 시험 콘텐츠

#### 제6조 (세트의 정의와 학점의 환산)

- ①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기본단위 20개를 1세트로 한다.
- ② MOOC 1세트는 1학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7조 (MOOC 개설의 허가)

- ① MOOC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인증서와 함께 MOOC 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MOOC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좌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이 온라인활용 교육 교과목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 ③ 총장은 소정의 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또는 교양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MOOC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MOO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교과목이 MOOC에 적합할 것
  - 2. 그밖에 MOOC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조건

#### 제8조 (MOOC의 개설과 운영)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MOOC 운영지침

- ① 어떤 교과목이 MOOC로 개설되기 위해서는 제3항의 각 차별 개강일을 기준으로 강의동 영상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 ② MOOC는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본교 학습관리시스템과 병행하여 혹은 본교 학습관리시스템이 아닌 MOOC 플랫폼에만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MOOC는 학년도 학기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④ MOOC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교수학습개발원은 수강생 정보 및 학습진행 정보 등을 지원한다.

제9조 (MOOC의 수강인증) MOOC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 (학점인정: MOOC의 담당교수가 본교 소속인 경우)

- ① 총장은 본교 교원이 담당교수인 MOOC를 본교의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학과(부)교수회의의 추천
  - 2. 온라인활용 교육 운영 규정이 정하는 온라인활용 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
  - 3.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위원회(교육과정운영위원회 또는 교양과정운 영위원회)의 심의
- ② MOOC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1.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
  - 2. 해당 학기 MOOC 수강
  - 3.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시험은 반드시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하여 평가함)
- ③ 본교 학생이 MOOC를 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을 한도로 한다.
- ④ 본교 교원은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MOOC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 (학점인정: MOOC의 담당교수가 타기관 소속인 경우) 본교 학생이 국내 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MOOC를 수강한 경우에 그것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내규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 (책임수업시간 인정 등)

- ① 제11조에 따라 본교의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승인된 MOOC는 수업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MOOC의 담당교수에게는 출석수업의 50%에 해당하는 수업시수를 인정하며, 해당 학기에 책임수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수업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적용한다.
- ③ MOOC 수강생 중 본교 소속 학생의 수가 「학사운영 규정」이 정하는 폐강기준에 해당 하는 때에는 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담당교수의 임무) MOOC의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강의자료의 구성, 강의 설계 및 관리
- 2. 강의 개설기간 동안 수강생의 수강형태 관리
- 3. 강의 형태에 따라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구성과 유지 관리
- 4. 시험의 운영과 평가
- 5.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 6. 그밖에 MOOC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MOOC 운영지침

제14조 (담당교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 MOOC의 담당교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학점당 1,000,000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제16조 (내규, 지침)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K-MOOC 강좌 특별학점 인정제│

내용 : 학기별로 대학에서 정하는 K-MOOC 강좌를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대상 : 재학생(초과 학기 재학생 제외)
인정과목 :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
수강신청 : K-MOOC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대학이 학기별로 정한 MOOC과목을 수강
학점인정 :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
과목개설 및 세부사항
1. 과목 개설은 학기당 1-3과목 내로 개설
2. 과목 세부사항
1) 이수구분 : 교양선택
2) 학점 : 1학점
3) 평가 : 절대평가, /PF로 개설

- □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 1. 교양선택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총 3학점에 한해 인정함
  - 2. 학기말에 K-MOOC 수강 사이트로부터 이수증을 발급받아 교수학습개발센터로 기간 내에 제출하면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 K-MOOC 강좌 수강 및 학점 인정 절차

개설과목 안내공지 ----홈페이지 학사공지

K-MOOC사이트에서 수강신청 학기중

수강 후 이수증 발급 종강 후 7일 이후

이수증 교수학습개발센터 제출 종강 후 10일 이내

교수학습개발센터 성적입력 성적입력 및 확인기간

#### **│자기주도설계전공 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3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설계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신청자격)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 료한 자이어야 하며, 평균평점이 2.00 이상인 자로 한다.

#### 제3조 (신청시기 및 절차)

- ①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과(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는 자기주도설계전공 관련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신청한다.

제4조 (대상과목) 자기주도설계전공 편성 시 기존의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 (학점이수)

- ① 최소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은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기설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 다.
- ④ 자기설계전공 이수허가 이전에 이수한 자기설계전공의 과목도 자기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포기하고 자기주도설 계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이수한 과목도 자기주도설계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 (운영지침)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은 학생이 자기주도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다.
- ②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는 신청한 학생 지도교수의 승인 후 자기주도설계전공 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교과목 주전공 학과에 요청한다.
- ③ 교과목 주관학과에서는 자기주도설계전공 교과목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통보하고 학사지원팀에서는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
- 제7조 (이수기간) 주전공학과(부)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주전공학과 (부)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 제8조 (이수제한)

주전공 외에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자기주도설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 없다.

#### 제9조 (이수포기)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말까지 "자기주도설계전 공 취소신청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을 포기한 경우 그 동안 이수한 과목 학점은 주전공 학점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및 연계(공유)전공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 자기주도설계전공 지침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 (학위수여)

- ① 자기주도설계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전공 학과(부)의 학위명과 학생설계전공학과(부)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② 자기주도설계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당해 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1조 (학칙적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졸업유예 운영규정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삼육대학교 학칙」제45조의2에 따라 삼육대학교 소속 학생의 졸업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졸업유예"라 함은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5조에 규정된 졸업요 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 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대상) "졸업유예"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학사과정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유예기간) 졸업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
- 제5조 (유예절차) 졸업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SU-WINGs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 제6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학칙 제3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3조(재학연한)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 ② 학칙 제43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제7조 (신청시기)

- ①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 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에 한다.
- ②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한다.

#### 제8조 (유예조건)

- ①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② 졸업유예자는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 적용한다.
-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10조 (기타사항)

- ①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 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 ②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졸업유예 지침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졸업유예 취소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삼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2.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 3. 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 ② 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
- 제3조(신청절차) ① 명예졸업증서는 수여대상자 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신청이 있어 야만 한다.
  -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명예졸업증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
    - 3. 이력서
    -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사망자의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 5. 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 제 4 조 (인정학과) 명예졸업 학과의 인정은 대상자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적했던 자는 재적했던 학과(부)로 하며, 재적한 적이 없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정할 수 있다.
- 제 5 조 (수여절차)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본 규정 제3조 ②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 ②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 제 6 조 (명예졸업증서)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 7 조 (학위종별) 증서에는 증서번호만 기재하고 학위종별은 기재하지 않는다.
- 제 8 조 (수여자의 관리) ① 본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는 학적부의 특기사항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근거를 기록하고, 학위등록번호란에 "명예졸업"이라 표시한다.
  - ② 본 규정의 제2조 제2항에 의한 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제 9 조 (대우) 명예졸업자는 본 대학교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 제 10 조 (졸업의 취소)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즉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 장학규정 │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 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 제4조 (지급대상) 본 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③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 ④ 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⑤ 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 ⑥ 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 ⑦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5조 (보고) 학생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2012.11.26.>

# | **제2장** | 장학위원회

제6조 (구성)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 회를 둔다.

-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전인교육원장,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② 장학실무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2.29>
-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위원회
  - 1.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 4. 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5.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장학관련 사항
- ② 장학실무위원회
-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사항
-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 3. 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제8조 (임기)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 제9조 (회의소집)

- ① 장학위원회와 장학실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 제10조 (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11조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휴학자 또는 제적자
  -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 ③ 학점등록생
  - ④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 제12조 (추천절차)

- ① 학생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 (추천기준) 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 ① 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 ② 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 제14조 (장학생 확정)

- ① 학생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수혜 자격요건, 인원수, 금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 ② 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학생등록기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5조 (지급방법)

- ① 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시)
- ②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교 외장학금은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며, 수혜 대상자 중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경우는 복학할 경우 수혜 대상자로 한다.
- 제17조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학생지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장** | 장학금 종류와 배경

- 제18조 (장학금) 장학금의 종류는 별첨자료 1과 같다. <개정:2014.3.13.>
- 제19조 (교내장학금의 배정) 교내장학금은 각 학(부)과별 모집단위 및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학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 (기탁 장학금) 각 학(부)과 및 개인에 직접 기탁된 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 교 장학기금계 정에 예입한다.
- 제21조 (기탁 장학금 배정) 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 제22조 (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학(부)과장이 추천한다.
  - ② 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학(부)과 장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장학위원 장(학생처장)이 선정한다.
  - ③ 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④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 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 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 제23조 (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본 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 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
  - ② 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③ 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한다.

제24조 (이중수혜금지) <삭제:2014.3.13.>

제25조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삭제 : 2012.11.26.>

제26조 (장학금 지급 범위)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제27조 (장학금의 승계) <삭제:2012.3.1.>

- 제28조 (장학생의 교체) 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1. 중복 수혜의 경우
  - 2.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 3. 기타
- 제29조 (장학금 반환)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자퇴, 제적할 경우, 기 수혜 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학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0조 (국가장학금 배정)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

- ① 국가장학금 I 유형
  -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8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 1.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I 유형 승인자인 0-8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제31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개정: 2016.5.2> 제32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2.>

#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본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 1. 장학금의 종류 및 세부시행규칙

#### \* 장학대상자 공통사항

- 모든 장학대상자는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 제적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수혜 받은 모든 장학금은 환수 처리된다. (단, 근로는 제외로 하며, 교외장학은 해당기관 규정을 우선함)
-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와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단, 근신의 경우에는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에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모든 교내장학금은 타 장학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장학금의 합계는 수업료의 100%를 넘지 못한다.

(단, \*이중수혜 가능 표기 장학, 일부 교외장학(외부재단규정을 우선함)은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전액 지급한다)

### ① 성적우수장학금

= ' '	–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기	ŀ	지급 기준	비고
입학 전체수석	4년간(건축학과는 5학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시모집 합격 전체수석		* 학과수석(차석)은 모 집인원이 많은(적은) 입학전형의 합격자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범위 내
수능성적우수 A	4년간(건축학과는 5학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영역 백분위 평균 98점 이상 -영어영역은 삼육대학교 환산등급표 적용		중 에서 선발한다. * 저지(스치) 모짓이워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범위 내 에서 지급한다. (단.이중수혜 가능 표기 장학 제외)
PEET성적우수 상위4%이내		PEET 전영역 상위 4%이내	백분위	이 해당 학교의 전체 의 해당 학교의 전체 모집정원의 30% 미 만일 경우, 수시(정 시) 모집인원에서 수 석과 차석을 선발한	
수능성적우수 B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 1학년 2학기 ~ 3학년 2학기 : 등록금 50% * 4학년 : 등록금 25%	대학수학능력시 수학, 영어영 평균 95점 이성 -영어영역은 환산등급표 적	험 국어, 역 백분위 상 삼육대학교 용	나. * 지저하기 서저기주	
PEET성적우수 2등급	(단.건축학과는 5학년)	PEET 전영역 상위 5%이내	벽 백분위	· 15학점 이상 이수 · 15학점 이상 이수 (약학과 17학점) · 평균평점 3.5 이상 · 채플성적 D이상	
수능성적우수 C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 * 1학년 2학기 ~ 2학년 : 등록금 20% * 3, 4학년 : 등록금 10% (단,건축학과는 5학년)	대학수학능력/ 수학, 영어, 팀 영역 백분위 이상 -영어영역은 교 환산등급표	시험 국어, 남구(1과목) 평균 93점 삼육대학 적용		
학과 수석		입학 학(부)과			
학과 차석	입학학기의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입학 학(부)과	차석		
학업우수1위	해당학기 등록금 100%		성적 1위	* 평점이 같은 경우,	* 종합성적
학업우수2위	해당학기 등록금 50%	종합성적	성적 2위	교무처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평 점: 80점 · 영 어: 20점 ·채 플: 5점 · 봉 사: 5점
학업우수3위	해당학기 등록금 30%	반형	성적 3위	* 배정인원은 학과, 학	·봉 사: 5점
학업우수4위	50만원		성적4위	년별 재학인원에 따라 배정	

### ②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학생임원	* 별도 책정	* 학생자치기구 및 학과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인 학생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채플 D 이상
나눔	* 100~200만원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학과사랑	*학과배정	가계곤란자	*각학과 교수상담을 통해 선

			n)
			발
나눔2	* A: 등록금 100% (국가장학금 포함) * B: 등록금 60%	* 기초생활수급자 · A: 국가장학금 수혜자 · B: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가족	* 등록금 1/3 * 각각 50만원	* 가족 3명 이상 재학 * 가족 2명 재학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도움	* 학과별 배정	* 학(부)과 근로학생	* 가계곤란자
RN/BSN 산학협력1	* A: 등록금의 25% * B: 등록금의 15%	* 간호학과 RN/BSN 학생 중 간호학과 협약 산학협력기관 간호사에게 지원 · A : 삼육서울병원 · B : 삼육서울병원 외	* 학년 당 8명 선발
건강증진	* 20만원	* 흡연자 중 완전히 단연한 학생에게 장학	학금 지급
가계곤란 기혼자	* 50만원	* 기혼자 중 가계곤란 자	* 학기당 10명 선발 * 직전학기 평점3.0이상, 채플 D이상
성적향상	* 50만원	* 직전학기보다 평균평점이 0.5점 이상 현 * 직적학기성적 2.5이상(학기당 72명 선범	· 향상 발)
보훈1	* A: 등록금 50% * B: 등록금 100%	* A: 국가보훈법의 교육지원 대상자 * B: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 A: 직전학기 평점 1.5 이상 * B: 성적제한 없음
북한동포1	* 등록금 50%	* 북한동포	* A : 직전학기 평점 1.5 이상
	* A: 등록금 100% * B: 등록금 60%	* 본교 교직원자녀	* A · 2 5 ol Al-
교직원 복지	* A: 등록금 50% * B: 등록금 30%	* 본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 A: 2.5 이상 * B: 2.0 ~ 2.5 미만 * 채플 D이상
	* A: 등록금 60% * B: 등록금 36%	* 간호보건대학 교직원 자녀	· · · · · · · · · · · · · · · · · · ·
자매 학교진흥	* 20만원	*본 재단 교육기관의 교직원 자녀	* A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 채플 D이상
세움	* A: 등록금 30% * B: 등록금 10%	*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	* A : 장애등급 1~3급 * B : 장애등급 4~6급
국제화능력향상	50~100만원	▶ 영어 및 제2외국어 성적 향상자	*2학년부터 신청가능
외국인	* A: 등록금 60% * B: 등록금 45% * C: 등록금 35% * D: 등록금 25% * 입학학기	* 외국인입학전형으로 입학한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 (화교 및 약학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15학점 이상, 채플 D 이상 · A: 4.0 이상 · B: 3.5 이상 · C: 3.0 이상 · D: 2.5 이상
최국인	* 입학학기 등록금 30%	* 본교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 직전학기 평점
	* A: 등록급 100% * B: 등록급 100% * C: 등록급 50%	* A: 입학 시 S-TOPIK 6급 취득자 * B: 입학 시 S-TOPIK 5급 취득자 * C: 입학 시 S-TOPIK 4급 취득자	* 직전학기 평점 · A: 4.0이상 (4년간) · B: 3.5이상 (1년간) · C: 3.5이상 (1년간)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삼육드림	* 70만원	* 본교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 출 횟수가 4회 이상인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 본교 4학기 이상 수료자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근로	* 시간당 7,530원	* 교내 각 부서 근로학생	* 가계곤란자
PLUS	*년간 최대 600만 원	* 학과 : 학과추천자	* 교외장학금 유치금액의 50%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 등록금 50%	* 국가대표	*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기
공로	* 50만원	* 임기를 마친 총학생회장	* 졸업 시 까지 지급
<u>9</u> 7	* A: 등록급 100% * B: 등록급 50% * C: 등록급 30%	* 사법·외무·행정고시, 공인회계사, 공 무원시험 7급, 5급 합격자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시험 합격자	* A : 최종합격자 * B : 1차 합격자(세무사 제외) * C : 세무사 1차 합격자
전공실기 성적우수	* 1위 :등록금 10% * 2위:등록금 7.5%	* 음악학과 학년 · 전공별 실기성적우수자	* 학과배정
마일리지	* 마일리지 적립금 액	* 마일리지 신청자	* 마일리지 100점당 1만원, * 취업진로지원센터 신청
삼육MVP	* Silver: 50만원	* 각 등급별로 자격을 갖춘자	*취업진로지원센터 신청

	* Gold : 100만원 * MVP : 150만원		
교환학생	* 등록금 100%	* 자비 교환학생	
해외봉사	35만원	사회봉사단 해외봉사프로그램 선발자	* 사회봉사단에서 선발
글로벌 봉사	* 200만원	* 재학기간 중 1년 이상 천명선교사(신학 과생 제외), 국제 구호단체, 국제기구 등 해외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	* 4학기(편입생은 2학기) 이상 수료자 (단. 마일리지장학 중복 불가)
목회자 양성1	* 등록금 17% (국가장학, 자매기관 진흥 장학제외)	* 신학과 재학생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B이상, 신학숙학점 이수
홍보대사 장학	* 홍보팀 지급기준	* 당해학기 학생홍보대사 활동자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채플 D 이상
멘토링 장학	* 10만원~60만원	* 교수학습개발팀 멘토링 * MVP캠프 신입생 멘토링	* 교수학습개발센터 선발 * 전인교육원 선발
재무인턴1	* 등록금 25%	* 경영학과 재학생 중 재무인턴 희망자	*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취업인턴쉽	600,000원(1개월)	*취업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자	*취업진로지원센터 신청
창의학습	100,000~500,000원	* 교내 공모전 당선자	
학생전략기획	시간비	* 학생전략기획팀 활동자	
글로벌리더	2,000,000원	자매대학연수 프로그램 선발자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
기타	*등록금 범위 내	* 가계곤란자	* 장학위원회나 장학위원장이 추천한 자

# ③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지급액	대상자	지급 기준
보훈2	* 등록금 50%	* 국가보훈법의 교육지원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 1.5 이상
북한동포2	* 등록금 50%	* 북한동포	* A : 직전학기 평점 1.5 이상
목회자 양성2	* 등록금 33% (국가장학금, 자매기 관진흥장학 제외)	* 신학과 재학생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B이상, 신학숙 학점 이수
재무인턴2	* 등록금 50%	* 경영학과 재학생 중 재무인턴 희망자	*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RN/BSN 산학협력2	* A: 등록금의 25%	* 간호학과 RN/BSN 학생 중 간호학과 협 약 산학협력기관 간호사에게 지원 · A: 삼육서울병원	* 학년 당 8명 선발
제자사랑 (교수회)	* 70만원	* 학부(과) 추천자	* 1년에 학부(과)별 1명
직원 (직원회)	* 50만원	* 학부(과) 추천자	* 별도 선발
도르가	* 50만원	* 도르가회 선발	* 삼육대학교회 도르가회
석일	* 100 ~ 200만원	* 석일장학재단에서 선발	* 석일장학재단
제일인재양 성 장학재단	* 100만원	* 선교사지망생 중 추천자	* 교수추천
매원	* 150만원	* 가계곤란자 중 전학기평점 3.0이상,	* 매원장학재단
KT	* 등록금 50%	* IT계열 학과 2명	* KT
농어촌 희망재단	* 150만원 ~ 250만 원	*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녀	* 농어촌희망재단
총동문회장 학	50만원	*총동문회 선발	*총동문회

밀알장학	*학과추천	* 학과에서 유치한 밀알장학금	*각 학과
교외장학	은성,인애,양종호,최종	·벽,태성.표래만, 홍명기,최성림, 정광석장학	* 각 기탁목적에 따라 지급
서울희망장 학	*50~100만원	*소득분위 0~4분위	* 서울장학재단
국가장학 금유형 I	* 33.75 ~260만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소득분위: 1~8분위 * 다자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금유형॥	* 예산범위내	* 국가장학금유형1 수혜자중 선발(대학 자 체 기준)	*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	인문100년, 이공계, 예술체육비전	*한국장학재단 선발 기준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 시간당 8천원 ~ 9.5천원	* 소득분위 : 8분위 이내	* 한국장학재단

### \* 기타 장학재단 및 단체

JS, KM, KT미래인재, 대산농촌문화재단, 두산연강재단, 매원장학재단, 본솔장학재단, 북아태지회, 서울우유장학회, 성남시장학회, 쌍용곰두리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 엘리야, 영풍문화재단, 오성장학재단, 재덕장학, 천국장학, 하이서울공익인재, 하트하트장학, 한국지도자육성장학, 형애장학회, 기타 지자체및 외부장학재단

### \* 개인기탁

권석윤, 김봉진, 김이열, 김창우, 김혜조, 박영자, 박영태, 박옥정, 손경상, 신혜원, 윤치승, 이건영, 이기호, 이병빈, 이원정, 이원정, 임병의, 정우영, 종림, 최경수, 최희만, 표래만, 커밍즈, 태성, 은성, 하평장, 한영선, 호송 등 다수

# │장학지급 규정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우수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 ① 평균평점이 높은 자
  -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 ③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평점이 높은 자(차례대로)
  - ④ 총 과목별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 ⑤ 채플성적이 좋은 자
  - ⑥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교과과목(채플 및 0학점 교과목 포함) 중 F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03조 (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 ② 학업우수 장학생: 학생처장
- ③ 학생임원장학생: 학부(과) 임원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학생처장
- ④ 근로 장학생: 해당부서장
- ⑤ 나눔1, 2 장학생: 학생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
- ⑥ 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해외봉사, 글로벌 봉사,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및 해당 부서장
- ⑦ RN/BSN 산학협력,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 기성적우수, 장학생: 학부(과)장
- ⑧ 외국인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장
- ⑨ 교외 장학금: 기탁자(단체), 학생처장
- 제4조 (장학금 인원배정) 장학인원 배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부(과)별, 학년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학업우수장학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5조 (근로장학금 운영기준)

- ① 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는 매 년 2월 근로장학생 운영계획서를 학생처 에 제출하여야한다.
- ② 학생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 ③ 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 제6조 (장학지도) 각 학부(과)장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 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장실습(Internship) 시행세칙 │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5조에 따라 국내외 현장실습(Internship)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현장실습(Internship)이라 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협약에 의해 국내·외 산업 현장 또는 관련기관에서 진행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의미한다.
- 제3조 (교과의 편성 및 학점) 현장실습은 다음의 호와 같이 편성하여 시행한다.
  - 1. 교과목 편성 및 구분

교과목명	현장실습 I	현장실습 Ⅱ	현장실습 Ⅲ	현장실습 IV	
학점	2	3	6	12	정규학기
실습기간	1개월(4주) 이상	2개월(8주) 이상	3개월(12주) 이상	4개월(16주) 이상	
교과목명	현장실습 I	현장실습 Ⅱ	현장실습 Ⅲ	현장실습 IV	
학점	2	3	6	12	계절학기
실습기간	1개월(4주) 이상	2개월(8주) 이상	3개월(12주) 이상	4개월(16주) 이상	

- \* 1일 8시간 기준
- 2. 교과목은 실습 기간에 따라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학수번호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 3. 재학 중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제4조 (현장실습 주관부서의 의무) 현장실습 운영 주관부서(취업지원팀)에서는 교육이 당초 의도 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제5조 (신청자격 및 절차)

- 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협약된 기관장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해외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국 언어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한다.
- ③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원은 학과(부), 학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학과(부) 회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수강 및 등록)

- ① 현장실습 신청자는 해당 학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② 계절제 현장실습 신청자는 수강신청과 함께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SU 인턴십'신청자는 수강료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6.6.20]
- ③ 현장실습 시간과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업시간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12학점 현장실습(Internship)의 교과목은 8학기 이상 자만 수강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개정: 2016.6.20]

- 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과정을 이수 할 경우,
  - 휴학생이 단기(3개월)로 이수하면 3학점, 중기(6개월)로 이수하면 6학점을 인정한다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현장실습(인턴십) 지침

• 재학생이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 후 해당 학기에 과정을 이수하면 12학점까지 인정한다.

제8조 (보칙)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과 현장실습기 관과의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8절 제34조의2 출·결석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

#### 제3조 (출결인정 범위)

구분	인정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 제4조 (출결인정 요건)

- ①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 ②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 ③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 제5조 (출결인정 제출서류)

- ①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 출전주관기관 공문 사본 1부(출전자 명단 포함)
  -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 ②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 합격기관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 보험 가입 증명 가능 업체)
  -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 ③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 •해당기관 소견서 1부
  -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 제6조 (출결인정 신청절차)

- ① 공결신청서 작성
- ② 해당 서류 제출
- ③ 학사지원센터 검토
- ④ 학과장에게 통보
- 제7조 (기타 사항) 조기 취업 합격자는 출석인정을 제외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과제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은 해당교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수 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생 선발 지침

우수 학생을 우리 대학교에 유치하고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학연수 제도 및 해외유학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어학연수의 경우 모든 경비를 우리 대학교가 지불하고, 1년 간의 해외 자매대학 유학의 등록금은 50%를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50%는 우리 대학교가 각각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도 우리 대학교가 제공한다.

### Ⅰ우수 학생 해외 유학 제도 규정Ⅰ

- ① 입학전형에서의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학생으로, 유학을 선택한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중 10명을 선발한다.
- ② 해외 자매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TOEFL 성적이 550점(CBT 213점, iBT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 ③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④ 미국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⑤ 선발된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말에 출국하여 지정된 해외 자매대학에서 각자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 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 ⑥ 취득하는 학점은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한 학기에 13학점 이상을 이수해 야 하며,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34학점으로 한다.
- ⑦ 해외유학에 선발된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유학 자매대학의 등록금은 우리 대학교가 부담한다. 기숙사비 및 식비는 학생 각자가 부담한다. 단, 선발학생의 왕복항공료는 우리 대학교가 부담한다.
- ⑧ 해외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우리 대학교가 제공한 모든 경비를 반환해야 하고 자매대학에서의 50%의 등록금 감면도 취소된다.

### Ⅰ입학성적 우수 학생 해외 어학연수 제도 규정Ⅰ

- ①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학생으로, 1년 간의 해외유학보다 단기 어학연수를 택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선발인원은 각각의 전공마다 1명씩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학과(부)에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되 1학년 평균평점(계절학기 포함)이 3.8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③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학교 생활, 인성에 대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④ 어학연수 기간은 3주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한 자가 학점 신청을 하고 어학연수를 마친 경우 연수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⑥ 연수 기간의 어학연수 비용과 왕복 항공료는 우리 대학교가 부담한다.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지침

# 부 칙

-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환 학생 제도 규정 |

### □ 영어권 교환학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영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 2. 전(全)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 4.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제3조 (선발조건)

-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 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 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4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5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 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 영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영미어문학부장
  - 반영비율: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 (2) 어학성적(30%)

iBT	PBT	반영점수
113이상	647이상	30
111-112	640-643	29
110	637	28
109	630-633	27
106-108	623-627	26
105	617-620	25
103-104	613	24
101-102	607-610	23
100	600-603	22
98-99	597	21
96-97	590-593	20
94-95	587	19
92-93	580-583	18
90-91	577	17
88-89	570-573	16
86-87	567	15
84-85	563	14
83	557-560	13
81-82	553	12
80	550	11

### (3) 면접(30%)

###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С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В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E	결여정도 심함

### □ 중어권 교환학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중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 2. 전(全)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 3. 신HSK 4급(180점)이상인 자
- 4.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제2의2조 (선발조건)

-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3조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파견인원)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제6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8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중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 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한다.
- 제10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 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 중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중국어학과장

• 반영비율: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 (2) 어학성적(30%)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 점수				
HSK(한어수평고사)	6급	6급	5급	4급	4급
H2V(원이구용표시)	(210점)	(180점)	(195점)	(210점)	(180점)
반영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 (3) 면접(30%)

###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С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В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E	결여정도 심함

- □ 일어권 교환학생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 3.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 4.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제3조 (선발조건)

-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4조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파견인원)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제6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 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 일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이상복 교수
  - 반영비율: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지침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 (2) 어학성적(30%)

일본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80점 이상			
JLPT	1급	_	2급	-			
반영점수	30점	20점	10점	5점			

### (3) 면접(30%)

###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С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В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Е	결여정도 심함

###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삼육대학교 삼육 MVP 인증 프로그램

#### 삼육MVP

- O 삼육(三育)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
- O MVP Mission, Vision, Passion을 겸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엘리트

###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이란?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자격 위주의 인증제에서 벗어나 교육적 가치를 부여한 성장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재학 중 세움영역, 키움영역, 나눔영역에서 등급별로 인증을 받음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을 충족하고, 나아가 국제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세움영역의 채플/기본소양교육, 키움영역의 영어/MOS/자격증/평점, 나눔영역의 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등급별로 정하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 기대효과

- 1) 입학에서 졸업까지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 2)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해줍니다.
- 3) 취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해줍니다.
- 4) 정직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 5) 나눔의 기쁨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의 개요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과 병행하며 경력마일리지 및 자격에 따라 인증 서를 부여합니다.

- 1) 적용대상
  - 현재 재학 중인 학부 학생(대학원생, 교환학생, 학점등록생, 휴학생 신청 불가)
- 2) 인정기간
  - 재학기간(휴학 포함) 중에 취득한 자격증 또는 마일리지에 한해 인정합니다. (단, 영어는 재학 또는 휴학 중 취득한 점수로 2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 3) 주관부서
  - 취업진로지원센터(팀장 02-3399-3231, 담당 02-3399-3232)
- 4) 인증등급
  - ① MVP (최상급)
  - ② Gold (1급)
  - ③ Silver (2급)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삼육 MVP 인증 지침

### 5) 장학금의 지급

① 마일리지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마일리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체영역: 해당등급의 전체영역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인증서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신청 절차

순서	내용	주관부서
1	인증 신청	취업정보센터
2	영역별 마일리지 및 자격 취득	학생 개인
3	서류 검토	취업정보센터
4	인증	취업정보센터
5 <b>•</b>	장학금 지급	학생지원처

### □ 삼육MVP 인증기준

등급		인증		Silver	Gold	MVP	비고		
영역	항목	과목	록	(2급)	(1급)	(최상급)	0, <u>T</u>		
	1. 채플			이수	이수(B학점)	이수(A학점)			
	<b>2</b> . 교양성경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학점 이수 (편입생 4학점)	
세움영역	3. 리더십	인성 & a 마일리지	비더십	300마일리지 이상	500마일리지 이상	800마일리지 이상			
	<b>4.</b> 진로설정	진로설정 마일리지		300마일리지 이상	600마일리지 이상	900마일리지 이상			
		TOEIC		600점 이상	800점 이상	900점 이상	모든 영역		
			PBT	490점 이상	570점 이상	608점 이상	누적 마일리지		
	_	5.	5	TOEFL	CBT	163점 이상	240점 이상	253점 이상	1,500 이상
	3. 영어(택 <b>1</b> )		IBT	57점 이상	94점 이상	102점 이상	장학금 지급		
	0 (11)	Teps	476점 이상		690점 이상	828점 이상	(100 마일리지 =1만원)		
키움영역		OPIc		Intermediate Low 이상	Intermediate High 이상	Advanced Low 이상	-1인편)		
	6. MOS/ICE	)L		Expert/Start	Expert/Start	Expert/Start			
	7. 자격증	자격증 마일리지		해당 없음	300마일리지 이상	900마일리지 이상			
	8. 평점			3.0 이상	3.2 이상	3.6 이상			
나눔영역	9. 봉사	봉사 마일	]리지	50 시간 이상	100 시간 이상	200 시간 이상			
	특 전			장학금 50만원	장학금 100만원	장학금 200만원			

<sup>※</sup> 특전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졸업자에 한해서 현금 지급합니다.

<sup>※</sup> 마일리지는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 세부 기준 설명 │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은 1회에 한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단, 예외는 학생경력개발 마일리지표에 명시함)

### O 세움(영역)교육

- 1) 채플 : 학점 이수(Gold급은 직전학기 성적 B이상, MVP급은 직전학기 성적 A이상)
- 2) 리더십 및 진로교육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관련 마일리지의 취득점에 따라 등 급별로 인정합니다.(참조: 학생경력개발 마일리지 점수표)
- 3) 삼육MVP 인증은 교양성경 10학점(편입생4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 키움(영역)교육

#### 1) 영어

- ① 영어 과목은 TOEIC, TOEFL, Teps, OPIc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②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3주이상의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한 후 인증서(수료증)를 취득한 경우 Silver급 영어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 MOS

① 취득과목

인 증	Silver	Gold	MVP
항목	(2급)	(1급)	(최상급)
MOS/ICDL	Expert/Start	Expert/Start	Expert/Start

② 교양필수선택 과목으로 MOS를 수강 시 할인된 접수비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3) 자격증

- ① 학생경력점수표에서 제시한 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협회(or기업)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단, 등급이 있는 자격증은 1급 또는 고급과정만 인정합니다. (참조: 학생경력개발 마일리지 점수표)
- ② 본 과정의 모든 자격증 및 제2외국어, 실습과정은 전공과 무관합니다.
- ③ 현장실습 중 해외봉사 활동은 6개월 이상 활동할 경우 MVP등급으로 인정하며, 나눔영역의 봉사활 동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 ④ 공인자격증 및 실습대회 관련 마일리지 항목은 인증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평점 :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입니다.

### O 나눔(영역)교육

1) 봉사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봉사 마일리지의 취득점에 따라 등급별로 인정합니다.

### ○ 특전

- 1) 각 등급별로 인증서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2)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득한 누적 마일리지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00마일리지 당 1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3) 하위등급 취득 후 상위등급 취득 시 장학금은 차액만 지급합니다.
- 4) 장학금은 3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 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이란 재학생들을 위한 성장형 전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세움 교육, 키움교육, 나눔교육을 단계별로 이수함으로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 (Passion)을 소유한 미더운 인재를 양성하는 삼육대학교만의 고유한 학생중심 교육제도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되며, 이전년도 재학생들은 종전의 삼육엘리트인증제와 병행하여 적용된다.
- ② 편입생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성적, IT자격취득, 전공 자격증,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타대학으로부터 온 교환학생 및 학점등록생 해당되지 않는다.
- ④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 한 학생은 영어시험과 MOS 및 전공자격증 시험에 대해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부 규정은 시험 주관기관에서 정한 시험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인증영역)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세움영역의 채플/기본소양교육, 키움영역의 영어/MOS/자격증/평점, 나눔영역의 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정해진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증한다.

#### 제5조 (인증등급)

- ① 인증등급은 MVP(최상급), Gold(1급), Silver(2급), 3가지로 정하며, 각 등급은 인증영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인증하게 된다.
- ② 상위등급 인증자는 하위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여겨, 별도로 하위등급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등급별 인증기준표는 별지에 따른다.

### 제6조 (인증기간)

- ① 영어시험은 재학 또는 휴학 중 취득한 점수로 2년 동안만 인정한다.
- ② MOS, 전공 자격증, 봉사시간은 재학 중 취득 또는 이수한 것에 한해 인정한다.
- 제7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재학 중으로 하며, 휴학 중이나 졸업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 (인증절차)

- ① 인증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취업진로지원센터에 신청한다.
- ② 제출서류는 재학 중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 한다.
  - ⑦ MVP인증서 최상급
  - ① Gold인증서 1급
  - © Silver인증서 2급
-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학생지원처에 장학금 신청을 한다.
- ⑤ 학생지원처는 서류 확인 후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제9조 (특혜 및 장학금 지급) 각 등급별 인증자는 인증서를 수여 받게 되며, Silver인증자는 50 만원, Gold 인증자는 장학금 100만원, MVP 인증자는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되, 하위등 급 취득 후 상위등급 취득 시 장학금은 차액만 지급한다.

### 제10조 (위원회)

- ①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취업정보.서비스센타장을 위원장으로, 취업정보.서비스센타 부장을 서기로, 교무부장, 각 영역별 위원을 임명하되, 인성영역은 교목실장, 영어영역은 영미어문학부장, MOS영역은 컴퓨터학부장, 봉사영역은 사회봉사단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인증서를 심의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선 및 연구를 수행 한다.

제11조 (세부규정에 대한 시행) 위원회를 통해 세부규정을 따로 정한 후 시행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6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삼육엘리트인증제를 병행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1] : 인증신청서

삼육MVP 인증 신청서							
신청 등급		□ MVP	☐ Gold	□Silver	신	l청일자	년 월 일
학 번				주민등록번호		-	□남/□여
성명	국문			7177	영문	-11-	
소속학부(과)	(			전공		학년	
주 소	(	)					
전화 번호	(	)	-	휴대폰	( )	-	
e-mail							1,1
	인성	□ 채플(학	점):	□ 교양성경	:	□ 인성&리더	<b>1십</b> :
		□ 진로설정	ਰੇ과목: 				
		TOEIC	TOEFL	TEPS	OPIc		
	영어		PBT				
			CBT 7	점 점	단계		
인증요건		☐ MOS Ex		□ MO	S Maste		MOS
확인	MOS	Master(Out					
	자	자 □ 자격증명		□ 공모전/	학술대회명	□ 현장실습	
	격 □ 제2외국어					학점 :	
	0	_ ○ │					
	봉사	사회봉사II		12 0	, 0	,	
		□ 헌	혈:	_회 🗆 장	기기증:		
인증불가사유							
첨부서류	1)		2	2)		3)	
	4)		Ę	5)		6)	
			위의 내용고	과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시쳐자·		(서 (	려\	
		·	-64 ·		(///	0)	
※ 주) 상기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본 신청서는 무효처리 되며 1년간 신청할 수 없음.							
접수번호	No.			접수자			
인증등급				인증확인란	인증확인란 삼육대학교 취업정보·서비스센터장 (직인)		
인증영역 제출서류(사본제출, 원본소지) 1 이성 ·성정표 또는 표근그램 차가 향이나							
1. 인성 : 성적표 또는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2. 영어 : 성적표 또는 이수증							
	3. MOS : 자격증 4. 자격증 : 자격증 또는 참가 실적물						
				관 작성 인증서			
			•				

[서식2] : 사회봉사 결과보고서

	삼년	숙MV	P	인증제를	분위한	사회봉사	<b>ㅏ</b> 결	과보	고서	
학	번					주민등록번호		-		□남/□여
성	명	국문					영문			
소속학부(과)						전공			학년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휴대폰	(	)	-	
e-mail										
봉 사 기	관명					봉사기간			~	
기 관 담 당	자				(서명)	연락처				
월	일				활동내용	용(구체적)				봉사시간
합계									총시	간:
				위의 내용	용이 사실고	바 같음을 보고합	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 주) 성	: וכּוּ	기재내	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본 신청서는 무	효처리	되며 <b>1</b> 년;	간 신청 	할 수 없음.

[서식3] : 인증서

삼육MVP 인증서
인증등급 : ☐ Silver(2급) ☐ Gold(1급) ☐ MVP(최상급)
<ul><li>○ 성 명</li><li>○ 학 부 (과)</li><li>○ 학 번</li><li>○ 주민등록번호</li></ul>
위 학생은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의 Silver (2급)에 필요
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 삼육MVP는 Mission, Vision, Passion을 가진 삼육인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상기인의 인증 내용은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Conservatory(U2Can ☐ music)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의 의미는 '당신은 삼육대학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서 대학생활 기간 동안 전공학위 취득 외에도 마음만 먹으면 '삼육대학교에서는 무엇이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대표하는 문구로서 21세기 삼육대학교 특성화의 일환으로 제시된 삼육 인증제의 모토가 되는 명칭으로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되고 기억되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착안하였다.

### □ 목적

21세기 삼육대학교 인성교육 특성화와 대학 문화 개발 및 정착, 평생 전인교육의 기틀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

- ① 대학생활 중에 악기 하나를 배운다.
- ② 전공 교수들의 지도로 저렴하고도 질 높은 악기교육이 가능하다.
- ③ 악기 임대를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우게 한다.
- ④ 삼육 인증제를 위한 초석을 다져 기타의 영역에 모델이 된다.

#### □장점

- ① 비싼 악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악기를 배울 수 있다.
- ② 악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분실할 염려가 없다.
- ③ 매주 1회 전공 강사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있다.
- ④ 어린 시절 배웠던 악기를 연결하여 할 수 있다.
- ⑤ 점심시간, 또는 일과 후에도 연습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 ⑥ 학교생활에 활력을 주어 보람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
- ⑦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다

### □악기 종류

① 관악기: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②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래식기타

## 삼육 MVP+ 졸업인증제

삼육 MVP+ 졸업인증제는 모든 재학생들이 재학 중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해 Mission, Vision, Passion 3개 영역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Mission(영성)영역의 채플/인성 및 진로 및 취업교육, Vision(지성)영역의 국제화/IT, Passion(실천)영역의 봉사 및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삼육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을 4년간의 교육과정에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삼육인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 ❷ 삼육인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해줍니다.
- ❸ 삼육인으로써 취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해줍니다.
- ✿ 삼육인으로써 정직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 **⑤** 삼육인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의 개요」

■ **적용대상**: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 **삼육MVP 인증기준(졸업인증기준)** 

### < Mission 영역>

	인증 분야	졸업인증기준
항 목	과 목	280016
	채플	이수필수
이서(그리여여)	MVP+교육(흡연음주예방교육)	이수필수
인성(교과영역) 그린교육		이수필수
진로 및	- - - - - - - - - - - - - - - - - - -	300마일리지 이상

### <Vision영역>

인증 분야		졸업인증기준
항 목	과 목	286016
영어(비교과영역) (택1)	TOEIC	73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TOEFL IBT	83점 이상
	TEPS	580점 이상
	TEPS Speaking	52점
	OPIc	IM2 이상
	TIE 프로그램	50시간 이상
IT(교과영역)	컴퓨팅 사고력	코딩3급

### <Passion영역>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삼육 MVP+ 졸업인증제 지침

인증 분야		졸업인증기준	
	항 목	과 목	= B C O · T C
봉	사(교과 및 비교과영역)	봉사프로그램	50시간 이상
	건강관리	생활건강증진프로그램	50시간 이상

# │ 스미스 아너스 인증제 지침 │

### (Smith Honors Certificate)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스미스 아너스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신청자격)

- ① 교양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전체 재학생(단, 휴학생 및 학점등록생 제외)
- ② 전체 평균평점 3.0 이상
- ③ 본교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제3조 (신청시기 및 절차)

- ①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스미스 아너스 인증제 신청서"와 함께 "스미스 아너스 로드맵"을 스미스교양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스미스교양대학은 심사 후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이수 완료 시 "스미스 아너스(Smith Honors)"로 최종 인증한다.
- ③ 신청자는 재학 중 스미스 아너스 교과목을 계획에 맞추어 이수한다.
- ④ 신청자는 마지막 학기 소정 기간 내 스미스교양대학에 "스미스 아너스 인증"을 신청하여 최종 인증을 받는다.

### 제4조 (대상과목)

- ① 스미스 아너스 인증이 가능한 대상과목은 인성교양영역 및 영역별 선택교양영역의 제 과목으로 한다.
- ② 이미 수강했거나 앞으로 수강할 계획인 교양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 제5조 (학점이수)

- ① 최소 이수학점은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스미스 아너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신청자는 "스미스 아너스 인증제 매뉴얼"에 제시된 Mission, Vision, Passion 유형과 트랙명을 선택하고 매뉴얼에 따라 교과목을 설계하고 이수한다.

#### 제6조 (운영지침)

- ①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은 신청자가 "스미스 아너스 인증 신청서"와 "스미스 아너스 로드맵"을 접수한다.
- ② 스미스교양대학은 신청자의 제반 서류를 심사하고 예비 인증을 실시한다.
- ③ 예비인증을 통과한 신청자는 재학 중 자유롭게 설계된 교과목을 이수한다.
- ④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은 신청자의 교과목 이수 상황을 매 학기 모니터링한다.

### 제7조 (인증조건)

- ① 최종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 성적 조건은 15학점 평균 평점이 3.5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반드시 신청자가 인증을 신청해야한다. 예비 인증을 받고 이수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 제8조 (이수포기)

① 스미스 아너스 교과목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 "스미스 아너스 인증 취소신청서"를 스미스 교양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스미스아너스 인증제 지침

② 스미스 아너스 교과목 이수를 포기한 경우 그동안 이수한 교과목은 영역별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되며 영역별 교과목 이수 의무를 따라야 한다.

### 제9조 (이수 교과목 수강 불가)

- ① 신청자가 자기주도설계 교과목 이수 중 해당 교과목의 폐지, 미설강, 폐강 등의 사유로 수강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에 통보한다.
- ② 스미스교양대학 교학팀의 지시에 따라 이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인증을 다시 받도록 한다.

### 제10조 (특전)

- ① 스미스교양대학으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은 경우 졸업장에 "스미스 아너스(Smith Honors)"를 명기한다.
- ② "스미스 아너스" 인증을 받은 경우 SU-마일리지 장학금 2,000 점을 부여한다.

제11조 (학칙적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전공 제도」

## □ 다전공제도

다전공 제도는 학과라는 세분화된 영역을 학문이라는 커다란 영역으로 통합하여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다전공 제도 확대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기반 각 학과별 커리큘럼 및 진로 로드맵(SU-CDR)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연계전공 및 융합(공유)전공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1)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부)가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통하여 연계전공과 관련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양성과 통합성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 2) 융합(공유)전공제

융합(공유)전공제란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공유)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하며, 주 전공의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융합(공유)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면 제1전공으로 인 정이 가능하다.

### 3)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기본전공학점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기본전공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본전공학점: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은 소속 전공 42학점(2017학번부터 39학점), 타 전공 36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며, 이때의 42학점(2017학번부터 39학점)을 기본전공학점으로 함

#### 4)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5)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전공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업무에서 정하고 있는 교직복수전공을 말한다.

### 6)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이 지발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자기학습을 설계함으로써 주도성을 갖춘 인재교육과 졸업후진로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공과정을 말함

# 「연계전공 제도」

### 신청 가능한 연계전공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하며,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스마트헬스케어 ·미디어콘텐츠 ·데이터과학 ·외식산업경영 ·공연예술콘텐츠

# 2개 학기를 등록하고 총 30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2개 학기를 등록하고 총 30학점 이상 취득자
- 2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에 동일하게 신청
- ③ **과목확인** 각 연계전공별 개설현황을 학사공지에 첨부파일로 공지
- 4 문의 각 과목별 담당교수
- **6 이수구분** 개설과목이 본인 학과인 경우 전공으로, 타학과인 경우 일반선택으로 수강신청 됨
- **③ 이수시기** 2학년 1학기부터
- 전 발 연계전공 선발기준에 준하여 선발하여 공고함
- ③ 학점이수 연계전공과목은 36학점 이상 이수
- ⑤ 학위수여 연계전공 또는 융합(공유)전공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함

# 신청 절차

전공별로 연계전공 신청서 접수 및 심사

1

승인 및 통보 후 학적사항에 적용

1

수강신청 기간에 학과별 연계전공과목 수강신청

1

개강 후 설명회

# 「교육과정 편성」

CURRICULUM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교양과목

교양과목은 장차 전공과목을 이수함에 앞서 필요한 기초지식과 전인적인 인격을 도이하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학교육의 필수적인 영역이다.

- O교양필수: 모든 학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영역으로 학문의 기초 도구가 되며 폭넓은 교양 습득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O교양선택: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과목으로 폭넓은 교양습득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전공과목

전공과목은 각 학과의 필수적인 이론 및 실험실습 과목으로 여기에는 전공필수 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이 있다. 2018학년도부터 전공필수 과목 개설을 최소한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O전공필수: 해당학과 학생은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전공학과의 기본 영역이다.
- ○전공선택: 전공필수와 함께 취득해야 하는 전공영역으로 여기엔 전공을 세분하거나 다양화하여 학생들 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 3.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외의 취득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문적 체험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정된 부전공과 교직과목 및 타학과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 O 일반선택: 규정된 교양, 전공, 부전공 및 교직과목 외에 취득하는 모든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이 된다. 인접 학과나 다른 어느 학과에서도 자유로이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O 부 전 공: 본인의 학과 전공 외에 타학과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 시 부전공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인재를 활용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 O 교직과정: 교원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정의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 증을 받게 된다.

#### 4. 교과목 번호

교과목 번호는 총 7자리로 구성되며 첫째자리 '0'은 학부, '1'은 대학원을 표시하며 나머지 6자리는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 학부 교과목코드 : 0000001 ~ 0999999 · 대학원 교과목코드 : 1000001 ~ 1999999

# [교육과정별 학점이수 기준표]

구 분		졸업이수	교양			자유선택	
		학점	필수	영역 필수	주전공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 부전공/교직/평생교육사	학점
단일전	고	130	24	15	75		16
	. 0	130	27	13	(심화전공 또는 자기주도설계전공 포함)		10
복수전	공	130	24	15	39	36	16
연계전	공	130	24	15	39	36	16
	응유)전공	130	24	15	0-75	75	16
	부전공	130	24	15	54 21		16
선택 사항	교직	130	24	15	50	22	19
VI 9.	평생교육사	130	24	15	54	30	7

출입이수 학 과		교양				일반선택 또는		
<u></u> Ч И	학점	교필	교선	소계	전필	전선	소계	포는 전공선택
약학과	165	4	-	4	130	31	161	-
건축학과	170	22	14	36	59	67	126	8

<sup>※</sup> 전공필수는 15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하나 학과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교양교육 과정」

GENERAL STUDIES

# 「교양과목 이수표」

## 1. 이수목적

본 과정은 전공을 위한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영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신앙적, 주체적 인격의 형성에 목적을 둔다.

## 2. 이수내용

## □ 핵심교양

핵심교양의 각 핵년, 학기별 배정은 다음과 같으며 '인성교양 영역'은 1과목 2학점 이수한다. 단, 신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학 년	1 학기	2 학기
1	종교와 인생	인성과 사회
2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3	인성교양 영역	

<sup>□</sup>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구 분	교양필	수	교양선택		
T 正	기초교양	핵심교양	영역별 교양		
이수학점 (39학점)	16	8	15		
과목/영역 구성	노작(그린)교육 (1) 사회봉사 (1) 클로컬사고와표현 (3) 클로컬영어 I, II (6) 인생설계와진로 I,II (2) 컴퓨팅 사고력 (3)	종교와 인생 (2) 인성과 사회 (2) 생활과 윤리 (2) 역사와 문화 (2)	인성교양 영역 (3) 인문학 영역 (3) 사회과학 영역 (3) 자연과학 영역 (3) 문화예술 영역 (3)		
이수의무	전과목 이수	전과목 이수	영역별 1과목		
비고	필수 (P) 과목: 채플, MVP <sup>+</sup> 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	-		

# □ 교양과정 편성

구	분		과목명	이수학점	이수학년	비고
향 수 의 필	기초 교양	노작교육 사회봉사 글로컬사고와표현 글로컬영어 II 글로컬영어 II 인생설계와진로 I 인생설계와진로 II 컴퓨팅사고력		1학점 1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1학점 1학점 3학점	1-1 또는 1-2 1-1 또는 1-2 1-1 또는 1-2 1-1 1-2 1-1 2-2 학기 중	필수 이수 (노작교육, 사회봉사 성적은 P/F로 표기) *사회봉사는 1학년 2학기부 터 신청가능
		학점소계		16학점		
	핵심 교양	종교와 인생 인성과 사회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1-1 1-2 2-1 2-2	필수 이수
		학점소계		8학점		
교 양 선 택	일반 교양	인성교양 영역 인 문 학 영역 어역별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 문화예술 영역		<b>3학점</b>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4학년 1-1,1-2, 2-1, 2-2 1-1,1-2, 2-1, 2-2 1-1,1-2, 2-1, 2-2 1-1,1-2, 2-1, 2-2	영역별 선택 이수
		학점소계		15학점		
		계		39점		

# 「교양필수 과목별 세부 안내」

# ■ 교양필수 과목별 안내

# 1 노작(그린)교육

• 해당학점 : 1학점(한 학기 이수)

• 해당학년 : 1학년(그외 학년은 소속학과 1학년 과목을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노작교육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 해당학과 : 배정표 참고(1학기 및 2학기 구분)

### ② MVP+교육 → 인성교육원에서 일정공지

• 해당학점 : 비교과로 운영(학점은 없으며, 졸업인증과목으로 필수이수)

• 해당학년 : 1학년(그 외 학년은 계절학기에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인성교육원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해당학과: 배정표 참고(1학기 및 2학기 구분)

### 3 흡연음주예방교육 → 인성교육원에서 일정공지

• 해당학점 : 비교과로 운영(학점은 없으며, 졸업인증과목으로 필수이수)

• 해당학년 : 1학년(단, 그 외 학년은 소속학과 1학년 과목을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금연금주클리닉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 해당학과 : 배정표 참고(1학기 및 2학기 구분)

### 4 글로컬영어교육

• 해당학점 : 3학점(두 학기 이수)

• 해당학년 : 1학년(단, 2-4학년은 소속학과 1학년 과목이 아닌 교양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해

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국제문화교육원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해당학과: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 **6** 채플(Chapel)교육

• 해당학점 : P학점(7학기 이수)

• 해당학년 : 전학년

배정시간: 1학년(화8), 2학년(월3), 3학년(수2교시), 4학년(수3교시)

(단. 상담심리학과 수4교시. 신학과 수2-3교시)

• 개설학년 : 학과 전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

### **6** 종교와 인생(1학년), 인성과 사회(1학년)/생활과 윤리(2학년), 역사와 문화(2학년)

해당학점: 2학점(총 4학기동안 8학점 이수)

• 해당학년 : 1학년/2학년

• 배정시간 : 학과에서 전공과목과 함께 자율적으로 배정(단, 교목처와 논의 후 결정)

해당학과: 전학과(단. 약학과는 3학년만 이수)

### ⑦ 인생설계와 진로 I/Ⅱ

이 과목은 학생들의 정체감,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명확한 비전, 직업(미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하고, 비전과 미션을 구현할 대학생활과 향후 10년의 진로 로드맵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도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해당학점 : 1학점

• 해당학년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배정시간 : 1학년(화9) 개설학년 : 1학년 해당학과 : 전학과

### 8 인성교양(3학년/4학년)교육

• 해당학점: 2018년도부터는 학번과 관계없이 3학점 이수

해당학년 : 3학년/4학년배정시간 : 월-목 6-7, 8-9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 | 핵심교양 이수표 |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종교와 인생	인성과 사회	각 2학점
2학년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각 2학점
	인성교양 영역	인성교양 영역	각 3학점

### 3 컴퓨팅사고력(CODING)

컴퓨팅사고력은 컴퓨터과학의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과 자신의 전공 분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본 교과목은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한다.

• 해당학점 : 3학점

해당학년: 2017학년도부터 시행

• 배정시간 : Cyber 강좌(학사지원센터에서 별도공지)

•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 ② 사회봉사교육

해당학점: 1학점(2014학년 1학기부터 적용)

• 해당학년 : 전학년

배정시간 : 사회봉사단 배정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 ● 글로컬사고와표현

해당학점: 3학점해당학년: 1학년

• 배정시간 : 월-금 지정시간 없이 배정

•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기초의약과학과는 언어추론으로 대체, 약학과 해당없음)

\* 이전학번에 해당되었던 글쓰기 및 독서토론은 더 이상 개설되지 않습니다. 미수강생이나 재수 강을 원하는 경우 글로컬사고와표현을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 ■ 영역별 교양선택 안내

● 이수학점 : 학번별로 상이함(2010학번까지는 4과목 8학점, 2011학번부터는 4과목 12학점)

② 영역 : 학번별로 상이함(2010학번까지는 6영역, 2011학번부터는 4영역)

**3** 이수학년 : 재학 중

**④**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6** 해당학과 : 전학과

# 「교직 과목 안내」

● 신청방법: 2학년 1학기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선발방법**: 1, 2학년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인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❸ 이수학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

**4 개설학년**: 3학년부터(단, 3학년 편생생은 제외)

**⑤ 해당학과** : 신학과,영미학부,중국어과,일본어과,상담심리학과,식품영영학과,원예학과,

간호학과,음악학과,환경디자인원예학과,유아교육과

# |교직설치학과 및 정원표|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비사범계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 「교양선택 과목 안내」

인성교양 영역은 3~4학년 기간 중 1과목(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아래 과목은 예시과목으로 학기별로 모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교과목명	학점	이수학년	비고
	21세기 리더십	2		
	English Bible Reading	2		
	건강원리와 실제	2		
	결혼과 가족관계	2		
	교회합창 (교양)	2		
	그리스도인 생활윤리	2		
	그리스도인 화법	2		
	로마서	2	3학년	
	북한사회와 선교 2 1 2 2		기록년 1-2학기	
	성경의 인물들	2		인성교양 영역은
이거그야 여여	성서예언과 종말	2	4학년 1 2호년	1과목(2학점)
인성교양 영역	성서와 인문학	2	1-2학기	이상을 필수로
	성서의 도시문명	2	중에	이수하여야 함
	세계문화와 종교(구,세계의 종교)	2	1과목	
	소그룹 리더쉽 I	2	선택이수	
	예수의 제자들	2		
	중국고전과 성서	2		
	창조론과 과학	2		
	채식과 건강(구, 채식과 건강॥)	2		
	청년과 신앙	2	-	
	크리스챤 리더쉽	2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 책임	2		
	고대도시의 인문학	3	3	
	논어 다시읽기	3	3	
	도덕적 딜레마와 정의로운 삶	3	3	
	독서치료	3	3	
	매스컴의 이해	3	3	
	문명과 세계사	3	3	
	문학과 커뮤니케이션	3	3	
	문학의 이해	3	3	
	생활교양한문	3	3	
	성공의 7가지 습관	3	3	
인문학 영역	세계문학과 철학의 만남	3	3	
	스페인문화와 언어	3	3	
	영화로 읽는 문학	3	3	
	인문학 콘서트	3	3	
	일본문화와 언어	3	3	
	정의론	3	3	
	중국문화와 언어	3	3	
	철학으로의 초대	3	3	
	프랑스 문화와 언어	3	3	
	한국문화와 언어	3	3	
	한국사의 이해	3	3	
	← 1 1-1-11			

구 분	교과목명	학점	이수학년	비고
	현대 중국사회의 이해	3	3	
	국제사회와 NGO	3	3	
	글로컬리더십_리더십의 이해	3	3	
	긍정심리학	3	3	
	기업가정신과 창업	3	3	
	다문화의 이해	3	3	
	대인관계 심리학	3	3	
	동북아시대의 국제법	3	3	
	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3	3	
	벤처기업과 기술창업경영	3	3	
	비서실무론	3	3	
	사고조사기법	3	3	
	사랑과 결혼의 심리학	3	3	
	사회적기업가정신	3	3	
	설득과 협상	3	3	
사회과학 영역	세계여행과 경영	3	3	
71447 07	언어의 세계와 소통	3	3	
	역사와 음악	3	3	
	예비부모교육	3	3	
	외식경영과 창업론	3	3	
	정부와 공공정책	3	3	
	지식재산권과 창업	3	3	
	창업역량과 창의적사고의 구현	3	3	
	창업이론과 실무	3	3	
	창의적사고와 문제해결	3	3	
	캡스톤디자인 창업스튜디오	3	3	
	평생교육론	3	3	
	행정학개론	3	3	
	현대마케팅의 이해	3	3	
	현대사회와 리더십 현실경제의 이해	3	3	
	건강과운동	3	3	
	건강의군당   뇌와 인간행동의 이해	3	3	
	시계 전신영공의 이에   대학수학	3	3	
	- 데리구리 - 동물보호.복지	3	3	
		3	3	
	복제동물의세계	3	3	
	생명공학의 이해(유전과질병)	3	3	
	생활속의 건강의학	3	3	
	생활속의 화학	3	3	
자연과학 영역	일기쉬운 미적분학	3	3	
	영양과 건강관리	3	3	
	웰빙과 구강건강	3	3	
	인간과 환경	3	3	
	인체의 이해	3	3	
	일반물리학	3	3	
	임상생리학	3	3	
	자동차문화	3	3	
	자연재해와 대비	3	3	
	1 - 1-11-1 11 1			

구 분	교과목명	학점	이수학년	비고
	장애인의 이해(구,장애인의 이해)	3	3	
	전인적 건강과 신앙	3	3	
	종양간호학	3	3	
	지구과학	3	3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3	3	
	창의적 발상기법 기반의 창의공학설계	3	3	
	천연물과 건강	3	3	
	Color & Flower	3	3	
	건축의 이해	3	3	
	그린디자인의 이해	3	3	
	글로벌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	3	3	
	대중매체와 영상문화	3	3	
	디자인과 생활	3	3	
	명인과의 토크 콘서트	3	3	
	문화의 흐름과 이해	3	3	
	바이오리듬과 유리드믹스	3	3	
	사진예술의 이해	3	3	
	성공창업을 위한 문화콘텐츠 이해와 활용	3	3	
	스포츠음악의 이해	3	3	
문화예술영역	신체미학과 표현	3	3	
	연극과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	3	3	
	영상과 실내디자인	3	3	
	영화와 스토리텔링	3	3	
		3	3	
		3	3	
	응급처치 및 CPR	3	3	
		3	3	
	필디스트와 프디센네이션 기초   패션과문화	3	3	
			-	
	포토샵과사진	3	3	
	한국문화와 움직임예술		1	
	현대인의 성(性)과 심리	3	3	
	NCS직업기초능력의 이해		3	
	SU 인턴십 III(중소기업체험학습)	3	3	
	SU 인턴십	3	3	
	SU인턴십 II	3	3	
	SU인턴십 IV(중소기업체험학습)	3	_	
	골프	3	3	
	기초프랑스어	3	3	
	니하오 기초중국어	3	3	
일반 영역	도시농부	3	3	
20 07	리더십과 팀 빌딩	3	3	
	멀티미디어 영어	3	3	
	볼링	3	3	
	북한사회와주민생활	3	3	
	비즈니스 영어	3	3	
	서키트에어로빅	3	3	
	성공적인대학생활을위한학습전략	2	2	
	소통과 즉흥표현	2	2	

#### 2018 대학학사편람(대학요람 학생용) I 교양선택 과목 안내

구 분	교과목명	학점	이수학년	비고
	수상스키	2	2	
	스쿼시	2	2	
	스포츠클라이밍	2	2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2	2	
	안전관리론	2	2	
	여성비전과 미래직업	2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개론	2	2	
	원어민일본어회화	2	2	
	웨이크보드	2	2	
	윈드서핑	2	2	
	음악의 이해	2	2	
	이미지미이킹	2	2	
	일본어기초회화	2	2	
	중국어 기초회화	2	2	
	중급 프랑스어	2	2	
	중급영어어휘	2	2	
	중급영어작문	2	2	
	중급영어청취	2	2	
	초급영어어휘	2	2	
	초급영어작문	2	2	
	초급영어청취	2	2	
	취업정보분석과 입사전략	2	2	
	커리어컨설턴트 직무이해	2	2	
	커뮤니케이션과 음악	2	2	
	토익 (Total Toeic Care I)-초급	2	2	
	필라테스	2	2	
	한국어와 기초중국어	2	2	
	헬스 클리닉	2	2	